



제317회 남양주시의회(임시회)
제4차 자치행정위원회

「미래교육협력지구」 업무협약 체결안

검 토 보 고 서

2026. 2.

자치행정위원회
전문위원

「미래교육협력지구」 업무협약 체결안

1. 제안경과

- 본 조례안은 2026년 1월 27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일로 자치행정위원회에 회부 된 안건임.

2. 제안이유

- 「미래교육협력지구」 운영을 위한 업무협약이 2026년 2월 만료됨에 따라 경기도교육청과 업무협약을 재체결하여 지역 미래인재 양성을 위한 다양한 교육 협력사업을 지속 추진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협약대상 : 남양주시 ↔ 경기도교육청
- 협약기간 : 협약체결일 ~ 2028. 2.
- 협약목적 : 「미래교육협력지구」 운영을 위한 상호 협력
- 협약 주요내용
 - 지역의 교육 자원 발굴 및 프로그램 기획·운영
 - 교육지원사업 추진을 위한 교육공동체 활동 지원
 - 「미래교육협력지구」 사업에 관한 행·재정적 지원 및 인적·물적 자원의 공유
- ※ 미래교육협력지구 : 학교와 지역사회가 연계하여 학생이 자신의 꿈을 실현하여 미래에 지역사회의 인재가 될 수 있도록 남양주시장과 경기도교육감이 협약으로 지정한 지역
- ※ 미래교육협력지구 사업 : 남양주시와 경기도교육청이 공동으로 시 관내 학생, 학부모, 교원 등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지역 특색 교육 사업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붙임1

나. 관련부서 : 미래교육과

5. 검토의견

- 본 체결안은 「남양주시 업무제휴와 협약에 관한 조례」 제4조제3항에 따라 공공기관 및 기업체 등과 업무제휴 또는 협약을 체결하기 전 적정성 등에 대하여 의회 의결을 받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2023년 2월 남양주시와 경기도교육청 간 체결한 「미래교육협력지구」 운영 업무협약이 2026년 2월 만료됨에 따라 미래인재 양성을 위한 다양한 교육 협력사업을 지속 추진하기 위해 재체결을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교육청과 함께 교육협력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한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라고 사료 되며 내용상 별다른 문제점은 없어 보입니다.

다만, 상당한 예산이 소요되는 사업이니 만큼 지난 3년간의 사업 실적과 실효성 등을 토대로 논의과정이 필요해 보입니다.

☑ 「남양주시 업무제휴와 협약에 관한 조례」

제4조(업무제휴·협약의 체결방법) ① 남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업무제휴·협약을 체결하기 전에 대상기관의 적정성과 업무수행능력 등을 충분히 검토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업무제휴·협약을 체결한 후 남양주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에 그 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 업무제휴·협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사전에 시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다만, 업무제휴 및 협약에 관해 개별법령에서 정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시의 예산부담을 직접 명시하는 경우
2. 시의 권리 포기를 포함하는 경우
3. 법률의 위임에 따라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는 내용을 포함하는 경우
4. 「지방자치법」 제47조제1항제8호에 해당되는 사항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긴급하게 추진이 필요한 경우에는 시의회의 의결을 받은 때부터 효력이 발생한다는 조건을 붙여 업무제휴·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 「경기도교육청 미래교육협력지구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업무협약) ① 교육감은 미래교육협력지구에 참여를 희망하는 시·군의 기초자치단체장과 미래교육협력지구 업무협약(이하 “업무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할 수 있다. 단, 교육감은 지역의 교육자치를 활성화하기 위해 업무협약 체결에 관한 사항을 교육지원청 교육장(이하 “교육장”이라 한다)에게 위임한다.

② 교육장은 업무협약에 따라 매년 2월 말까지 당해연도 해당 시·군의 추진사업에 대해 기초자치단체장과 합의하도록 한다.

☑ 「남양주시 미래교육협력지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사업비 등의 지원) ① 시장은 제4조에 따른 사업의 세부 내용과 사업비 등에 대하여 연도별로 교육장과 협의를 통해 정한다.

② 시장은 제4조에 따른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사업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학교, 개인 및 단체 등에 지원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사업비 지원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남양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학교에 사업비를 지원하는 경우 「남양주시 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다만 신청 및 정산 관련 서류는 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